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합572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서하운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1. 3. 5. 접수 제280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원금 4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3. 15.부터 2018. 3. 1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신용보증서(대출보증용)를 발행하였고, C은 2017. 3. 16. 이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2020. 9. 9. ‘신용보증원금 423,000,000원, 보증기한 2021. 9. 24.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21. 3. 8. 원고에게 ‘C에 관하여 2021. 3. 4. 당좌거래정지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1. 7.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C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424,966,393원(= 원금 423,000,000원 + 이자 1,966,3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B은 2021. 3.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인인 C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뒤에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여 실제 위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에 대하여 원고 이외에도 여러 채권자들이 존재하였던 점, ② B은 C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새로 차용하는 것이 아닌,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통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줄 목적으로 이뤄진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도 20억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B과 피고의 대표자는 B이 C을 설립하기 전까지 10년 넘게 같이 근무한 사이이고, C과 피고는 동종업계의 회사인 점, ② 피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이라도 하면 5억 원 정도는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의 답변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원, 판사 이인경, 판사 박동우

[별지]

1. 남양주시 D 도로 319㎡ 중 1518450분의 131175

2. 남양주시 E 도로 161㎡ 중 639975분의 508800

3. 남양주시 F 도로 59㎡ 중 1518450분의 131175

4. 남양주시 G 도로 4㎡ 중 1518450분의 131175

5. 남양주시 H 공장용지 1,328㎡

6. 남양주시 H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1층 공장

1층 198㎡

7. 남양주시 H에 있는 I호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1층 공장

1층 198㎡

8. 남양주시 J 도로 582㎡

9. 남양주시 K 임야 90㎡

10. 남양주시 L 창고용지 2,517㎡

11. 남양주시 L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1층 창고시설

1층 198㎡

12. 남양주시 L에 있는 I호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1층 창고시설

1층 198㎡

13. 남양주시 L에 있는 M호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1층 창고시설

1층 198㎡

14. 남양주시 L에 있는 N호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창고시설

1층 99.45㎡

2층 99.45㎡. 끝.

1) 소장에 첨부된 별지에는 이 사건 별지 제1항 도로에 관한 B의 지분(1518450분의 131175) 표시가 누락되어 있으나, 다른 도로에 관하여는 B의 지분을 표기한 점에 비추어 위 누락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